

변경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1. 집합투자기구 : NH-Amundi 필승코리아 30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2. 효력발생일 : 2022년 4월 6일
3. 정정사유
 - 자본시장법,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사항 반영 (금전자입 제한 예외 조항 추가 등)
 - 적용 법률 변경, 용어 및 문구 변경 등 (재무상태표 등)
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법 용어의 변경 (공통)	대차대조표 제X 영업일	재무상태표 X 영업일
제3조(집합투자기구 의 명칭 및 종류 등)	①~③ (생략) <신설>	①~③ (현행과 동일) ④ 제3항 각 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
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 무)	① (생략)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이를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. ③ (생략)	① (현행과 동일)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이를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, <u>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</u> 등의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. ③ (현행과 동일)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 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<u>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</u>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 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<u>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u>
제12조(수익자명부)	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<u>집합투자업자로부터</u>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	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<u>판매회사로부터</u>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

	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종류 및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	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종류 및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
제15조(투자대상자산 등)	2.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-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.(이하"채권"이라 한다.) 3.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"자산유동화증권"이라 한다)	2.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-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.(이하"채권"이라 한다.) 3.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"자산유동화증권"이라 한다)
제17조(운용 및 투자제한)	2. 나. ...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,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 (이하 생략)	2. 나. ...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,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 (이하 현행과 동일)
제28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대차대조표상</u> 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재무상태표상</u> 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

	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	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
제30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대차대조표</u></p> <p>2. 손익계산서</p> <p>3. 자산운용보고서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재무상태표</u></p> <p>2. 손익계산서</p> <p>3. 자산운용보고서</p>
제33조(상환금 등의 지급)	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①~② (현행과 동일)</p> <p>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</p>
제37조(보수)	<p>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<u>대차대조표상</u>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1~3. (생략)</p>	<p>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<u>재무상태표상</u>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1~3. (현행과 동일)</p>
제47조(금전차입 등의 제한)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.</p> <p>1~2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.</p> <p>1~2. (현행과 동일)</p> <p>3.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<u>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</u>로서 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으로 정하는 때</p>
제48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<p>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</p> <p>(이하 생략)</p>	<p>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(현행과 동일)</p> <p>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<u>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</u>)</p> <p>(이하 현행과 동일)</p>
부칙		(변경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2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변경대비표

[투자설명서]

1. 집합투자기구 : NH-Amundi 필승코리아 30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2. 효력발생일 : 2022년 4월 6일
3. 정정사유
 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
 - 자본시장법,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사항 반영 (금전차입 제한 예외 조항 추가 등)
 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(2021.05.07) 반영
 - 적용 법률 변경, 용어 및 문구 변경 등 (재무상태표 등)
4. 정정내역

1. 구분	변경전	변경후
법 용어의 변경 (공통)	대차대조표 제X 영업일	재무상태표 X 영업일
[요약정보]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 운용전문인력	* 투자비용 <신설>	* 투자비용 -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, 총보수 및 비용: '총보수·비용' 열 추가 - 최근 결산일 기준 업데이트 * 투자실적추이/운용전문인력 - 작성기준일 기준 업데이트
제1부. 2.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및 형태	가~마. (생략) <신설>	가~마. (현행과 동일) 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여부: 해당사항 없음
제2부. 5. 운용전문 인력		운용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 등 작성기준일 기준 업데이트
제2부. 8.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대상	가. 투자 대상 ②채권 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 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 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 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 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 ③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 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	가. 투자 대상 ②채권 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 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 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 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 ③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 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

	<p>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</p>	<p>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</p>
	<p>나. 투자 제한 동일종목 투자제한 나. ...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합니다)</p> <p>금전의 차입 가.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.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. ①~② (생략) <신설></p>	<p>나. 투자 제한 동일종목 투자제한 나. ...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합니다)</p> <p>금전의 차입 가.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.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. ①~② (현행과 동일) ③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으로 정하는 때</p>
<p>제2부.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</p>	<p>다. 기타위험 투자신탁 해지 위험 다음 각 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(의무 해지) 1~4. (생략) 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.</p>	<p>다. 기타위험 투자신탁 해지 위험 다음 각 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(의무 해지) 1~4. (현행과 동일) 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<u>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</u>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<u>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.</u></p>
<p>제2부. 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</p>	<p>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<u>대차대조표상</u>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합니다)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</p>	<p>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<u>재무상태표상</u>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합니다)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</p>
<p>제2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</p>		<p>최근 결산일 기준 업데이트</p>

항		
제2부.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. 이익배분	(2) 상환금등의 지급 -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	(2) 상환금등의 지급 -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 실적 등에 관한 사항		최근 결산일 및 작성기준일 기준 업데이트
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규모		작성기준일 기준 운용규모 업데이트
제5부. 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수익자총회등	(2)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- 수익자 총회의 소집통지는 <u>예탁결제원</u> 에 위탁하여야 하며, <u>예탁결제원</u> 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. <신설> 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-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법령 및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에 위탁하여야 합니다.	(2)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-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<u>전자등록기관</u> 에 위탁하여야 하며, <u>전자등록기관</u> 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. - <u>전자등록기관</u> 은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는 때에는 가부 등의 표시로 그 수익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<u>법시행규칙 제20조</u>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내야 합니다. 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-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법령 및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<u>전자등록기관</u> 에 위탁하여야 합니다.
제5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	(1) 의무해지 (생략) ·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	(1) 의무해지 (현행과 동일) ·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<u>별제6조제6항</u> 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	(2) 임의해지 (생략) -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(50억 미만)에 해당되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,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	(2) 임의해지 (현행과 동일) -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(50억 미만)에 해당되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,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

	<p>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	<p>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
<p>제5부.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</p>	<p>가. 정기보고서 (1)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(생략) ② 결산서류 -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. · <u>대차대조표</u> · 손익계산서 · 자산운용보고서</p> <p>(2) 자산운용보고서 -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</p> <p>(3)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 -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</p>	<p>가. 정기보고서 (1)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(현행과 동일) ② 결산서류 -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. · <u>재무상태표</u> · 손익계산서 · 자산운용보고서</p> <p>(2) 자산운용보고서 -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</p> <p>(3)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 -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</p>
	<p>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 -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. · (생략) ·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</p>	<p>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 -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. · (현행과 동일) ·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<u>(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</u></p>

	(이하 생략)	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 (이하 현행과 동일)
제5부. 4. 이해관계 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. 이해관계인과 의 거래내역		작성기준일 기준 업데이트

변경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1. 집합투자기구 : NH-Amundi 필승코리아 30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2. 효력발생일 : 2022 년 4 월 6 일
3. 정정사유
 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운용실적 등 갱신
 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(2021.05.07) 반영
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[요약정보]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 운용전문인력	* 투자비용 <신설>	* 투자비용 -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, 총보수 및 비용: '총보수·비용' 열 추가 - 최근 결산일 기준 업데이트 * 투자실적추이/운용전문인력 - 작성기준일 기준 업데이트